

연금보험료 []납부 예외 신청서 []납부 재개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[] 지역 가입자가 신청(신고) 하는 경우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					
	전화번호(주택)	(회사)			휴대전화		
	전자우편주소(e-mail)						
	*납부 예외 신청서 작성			*납부 재개 신고서 작성			
예외사유 부호	납부 예외일	납부 재개 예정일	납부 재개일	소득월액	재개월 납부희망여부	특수직종 부호	
					[]희망 []미희망		

[]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신청(신고) 하는 경우	사업장 관리번호		사업장 명칭			전화번호				
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· 국내거소신고번호)	*납부 예외 신청서 작성			*납부 재개 신고서 작성			가입자 확인	
			예외사유 부호	납부 예외일	납부 재개 예정일	납부 재개일	소득월액	재개월 납부 희망여부		특수직종 부호
							[]희망 []미희망		(인)	
							[]희망 []미희망		(인)	
							[]희망 []미희망		(인)	
							[]희망 []미희망		(인)	
							[]희망 []미희망		(인)	
						[]희망 []미희망		(인)		

「국민연금법」 제9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(납부 재개)를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

지역가입자 예외사유 부호

- 실직
- 병역의무수행
- 재학
- 교정시설 수용
- 보호(치료)감호시설 수용
- 1년 미만 행방불명
- 3개월 이상 입원
-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(지원)대상
- 사업중단
- 휴직(기타사유)
- 재해·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
- 기타

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

- 산전후휴가·육아휴직
- 병역의무수행
- 재학
- 3개월 이상 입원
- 휴직(기타사유)
- 무모수 대표이사
- 무급 근로자
- 산재요양
-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

첨부서류	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"[]납부 예외신청서"란에, 납부 재개신고의 경우에는 "[]납부 재개신고서"란에 "√"표시를 하십시오.
2. "납부 재개 예정일"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,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(예정)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.

<납부 예외 신청시 적어야 할 사항>

3. "지역가입자 예외사유번호"란 또는 "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번호"란에는 각각 그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.
4. "납부 예외일"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.

<납부 재개 신고시 적어야 할 사항>

5. "소득월액"란에는 납부 예외 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적으십시오.
6.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.
7. "특수직종부호"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「광업법」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"1"을, 「선원법」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"부원"인 경우에는 "2"를 적으십시오.
8.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 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